

# 투자권유준칙

제정 2015. 3 .5.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투자권유대행인이 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경우 회사의 임직원으로 본다.)이 전문투자자인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법 시행령·법 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고객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법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2.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4. “포트폴리오 투자”란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전략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할 것
  - 나. 임직원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전략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경성을 회사 또는 책임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5. “파생상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파생상품
  - 나. 파생결합증권
  - 다.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나목의 증권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 제3조 (투자권유의 원칙)

회사 및 임직원은 투자권유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고객에 대하여 성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4.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수행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임직원의 관련 업무를 감독하는 책임자는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 제2편 투자자 구분 등

### 제4조 (방문 목적 확인)

- ① 임직원의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에게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 (투자자의 구분)

-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고 투자권유를 중단하여야 한다.

## 제3편 투자권유 시의 의무사항

### 제6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①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

야 한다.

② 임직원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든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임직원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 제7조(투자자 정보 파악 및 투자자 성향 분석 의무)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제9조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5.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내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제10조 (설명의무)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투자자의 자필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가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제11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해외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는 전 조 제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3. 투자대상 국가의 법제, 세제 등의 특징과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예상 영향

4.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해지 여부 및 목표 환위험 해지 비율

5. 환위험 해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해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6.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환해지를 하는 자펀드(hedged fund)와 환해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unhedged fund)간의 판매비율을 조절을 통해 환해지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임직원은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에 대한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편 기타사항

### 제12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1]과 같이 분류한다.
1. 정량적 요소: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참고하거나 인용할 수 있다.
- ③ 임직원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제13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제반사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제14조 (점검 및 교육)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투자권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내부통제기준 및 이 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투자권유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투자권유절차, 실명확인 절차, 자금세탁방지과 관련된 의무사항 및 고개확인 절차와 같은 내용에 대한 내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공시)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투자권유준칙을 제공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 투자자정보 확인서

본인은 에이디에프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고지해 드린 것입니다.
2. 향후 12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 일자 :

▶ 고객의 성명 : (서명) or (인)

▶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성명 : (서명) or (인)

###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본인은 에이디에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귀사”)로부터 귀사가 제시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고 금융투자상품을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귀사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추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 정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귀사가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귀사가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 일자 :
- ▶ 고객의 성명 : (서명) or (인)
- ▶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성명 : (서명) or (인)

###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본인은 에이디에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귀사”)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위험 수준의 금융투자상품을 권유(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따른 본인의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귀사로부터 본인이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 정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 정도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해 높아 본인에게 부적합하므로 귀사가 이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귀사로부터 어떠한 투자권유도 받지 않았으며, 상기 거래가 본인의 소신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귀사가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일자 :

▶ 고객의 성명 : (서명) or (인)

▶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성명 : (서명) or (인)

(별표 1)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 제외) 투자위험등급

| 구 분            |            | 초고위험<br>(Speculative Risk)          | 고위험<br>(High Risk) | 중위험<br>(Intermediate Risk) | 저위험<br>(Low Risk) | 초저위험<br>(Ultra Low Risk)        |
|----------------|------------|-------------------------------------|--------------------|----------------------------|-------------------|---------------------------------|
| 채 권            |            |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                    | 회사채<br>(BBB+~BBB -)        | 금융채<br>회사채(A- 이상) | 국고채<br>통안채<br>지방채<br>보증채<br>특수채 |
| 파생<br>결합<br>증권 | (ELS, DLS) | 원금비보장형                              |                    | 원금<br>부분보장형                | 원금보장형             |                                 |
|                | ELW        | ELW                                 |                    |                            |                   |                                 |
| 주식             |            | 신용거래,<br>투자경고종목,<br>투자위험종목,<br>관리종목 | 주 식                |                            |                   |                                 |
| 선물옵션           |            | 선물옵션                                |                    |                            |                   |                                 |

##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 분류 (당사 자체 분류)

###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 실물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신탁
- 구조화된 증권(원본손실가능성이 있는 것)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투자신탁

#### **2등급 : 높은 위험**

-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 투기등급 채권 및 이머징마켓에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
- 상장된 리츠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 **3등급 : 중간 위험**

-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 구조화된 증권(원본보존추구형)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투자신탁

#### **4등급 : 낮은 위험**

-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등급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
- AA급 이상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보강이 되어있는 부동산 투자신탁, 특별자산 투자신탁

#### **5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자산의 대부분을 국공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
- MMF